

학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대학은 대구공업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우리 대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우리 대학에 두는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2017.03.02.)(개정:2018.03.02.)(개정:2018.06.29.)

계 열	구분		입학정원 주간
	계열/학과명	전 공 명	
공 학	자동차과		95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전공	85
		신재생전기전공	
	항공정비과		85
	기계과		53
	전자정보통신과		49
	공병부사관과		35
	건축과		40
토목조경과		45	
인문사회	사회복지경영계열	사회복지경영전공	110
		노인복지상담전공	
	유아교육과(3년제)		58
보건의료행정과		30	
자연과학	호텔외식조리계열	호텔외식창업조리전공	85
		베이커리바리스타전공	
예·체능	헤어디자인과		38
	메이크업분장예술과		40
	피부&네일과		33
입학정원 합계		88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는 계열 및 학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의 2(계열/학과의 개폐) ① 각 계열/학과의 당해연도 입학정원대비 신입학생이 2년 연속하여 70%미만인 경우 익년도부터 모집을 정지한다.

② 계열/학과의 개폐는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③ ①항에 해당하는 계열/학과의 경우라도 총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 6월부터 8월 사이
2. 동기휴가 : 12월부터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 : 3월 20일
4. 일요일
5. 국정공휴일

②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단, 임시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2017.03.02)

제4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학기수업일수의 1/4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증명서
2. 최종 학교의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 신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공표한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2018.02.01.)

② <삭제>(개정:2018.02.01.)

제14조의 2(입학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3(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4(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04.21.)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5조의 2(2중 학적의 금지) 우리 대학 학생은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7.01.11.)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 단, 편입학은 동일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2016.03.02.)

제16조의 2(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혹은 2학년 1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과 폐지의 경우 전과시기 및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전과 시기가 1학년 2학기 초인 경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자, 2학년 1학기 초인 경우 전과목의 총평점이 C급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전과를 허락한다.

③ 산업체 위탁 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④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입학과 기준)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계열)의 폐지, 학과의 명칭 변경, 전공변경,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특례로 적용하여 전입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전과 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전입 학과장이 결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전적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3(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① 우리대학교 협약관계의 협약대학소속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2학년 초에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 시기는 2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재입학)

① 퇴학한 자는 정상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적하였던 학과(계열)를 원칙으로 하며 총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단, 폐과의 소속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과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상 학생 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일반,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 할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7.03.02)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 의료인(한의사 포함)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창업을 입증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은 일반(창업 포함) 및 질병인 경우 학기별 혹은 1년 단위로 하고 군 입대일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까지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휴학할 수 있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수업일수의 1/4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교과비율은 학점기준으로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반, 산업체 위탁생반, 산업체 맞춤형사업관련 개설반 등은 산업체의 요구와 개설학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2017.03.02)

②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2017.03.02)

③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실습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할 수 있다.

(제정:2016.03.02.)

제22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 1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2017.08.15.)(2017.12.01.)

제23조(평생교육과정 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1년 이내의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17..12.01)

③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제50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3(학점은행제)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 대학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 23서식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평생교육원에서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2016.08.29.)

제23조의 4(시간제 등록) ① 제12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매학기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학점 인정을 받고, 우리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학칙 제24조 제2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는 당해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23조의 5(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6(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① 우리 대학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2015.08.31.)

제23조의 7(실험실 안전교육 사이버e-러닝 강좌) <삭 제> (개정:2018.06.29.)

제24조(교과이수 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하 되,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현장 실습 이수를 최대 3 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개정:2016.10.27.)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77학점(2년제) 또는 115학점(3년제) 이상이며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재 학기간 중 이수 할 수 없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개정:2017.08.15.)

③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인 77학점(2년제) 또는 115학점(3년제) 중 20학점은 본인의 선택 에 따라 타 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타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표시하여 관리하고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2017.08.15.)

④ 학생은 매학기 11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단, 사회봉사, 현장실습 학점은 22학점 초과 범위에 제외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 장의 승인을 얻어 11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6.10.27)(개정:2018.02.01.)

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⑥ <삭제>(개정:2018.02.01.)

제24조의 2(입학자의 교양 및 교직 학점 인정) 전문대학 졸업 또는 학사 학위취득 후 신(편)입학 한자는 교양 및 교직 학점에 대하여 우리 대학 교육 과정의 동일 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이전 대 학에서 이미 취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의 3(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우리 대학의 해외 자매학교 또는 대학에서 승인하는 해외 대 학에서 어학연수를 이수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의 4(군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병역법에 의하여 군 복무중인 자가 우리대학 및 해당기관에 서 제공하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우리대학 교육과 정의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고려하여 전공 및 일반선택교과로 구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우리 대학에 개설된 온라인강좌 수강에 군복무자의 등록을 허용하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상한선을 둔다.

②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의 5(조기취업자 취득학점 인정) 조기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교육과정 이수 인정 및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규 정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2016.10.27.)

제24조의 6(산업체 현장경력 학점 인정) 국내외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또는 현장 경험 등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2018.03.01.시행)

제24조의 7(특별학점 인정) ① 학점인정이 가능한 (공인자격증 등)자격증 취득자에게는 관련과목의 학점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2018.03.01.시행)

② 특별학점은 최대 3학점(2년제)까지 전문교과 등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2018.03.01.시행)

제24조의 8(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점인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8.03.01.시행)

제25조(수업) ①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2018.06.29.)

② 수업은 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전일제수업, 방송·통신수업(원격수업), 온·오프병행수업(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등),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6.03.02.)

(개정:2018.06.29.)

제25조의 2(집중수업) ① 제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5조의3(원격수업) ① 우리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2018.06.29.)

② 총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원격수업을 수강할 경우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강의를 받은 것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2018.06.29.)

③ 원격수업 수강에 의한 학점인정은 우리 대학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원격 수업을 수강할 경우 졸업학점의 20%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2018.06.29.)

④ 타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이 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교류협약 등을 맺을 경우 본 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2018.06.29.)

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8.06.29.)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2017.03.02)

③ 학과/계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9단계 평점 방법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⁰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는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개정:2018.02.01.)

③ 추가시험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7.03.02.)

④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2018.02.01.)

⑤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9단계 평점 방법

등 급	배 점	평 점
A ⁺	100 - 95	4.5
A ⁰	94 - 90	4.0
B ⁺	89 - 85	3.5
B ⁰	84 - 80	3.0
C ⁺	79 - 75	2.5
C ⁰	74 - 70	2.0
D ⁺	69 - 65	1.5
D ⁰	64 - 60	1.0
F	59이하	0
P		불 계

제28조(진급인원) 재학 중 해당학년의 1년 단위로 수학함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는 진급을 허가한다.

제29조(성적의 취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② 매학기 2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개정:2018.02.01.)

③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④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⑤ C+이하의 성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성적 취소는 재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의 2(성적 취소 및 학기 재이수) 등록 직전 학기의 취득성적이 불량하여 학기 단위로 재수강을 원할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학기 단위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한 학기 취득학점이 10학점 미만)하여 수업연한의 초과가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경고한다.(개정:2016.08.29.)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2항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위증서와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학사(Associate Degree)학위를 수여한다.(개정:2016.03.02.)
(개정:2017.08.15.)

계열	계 열 / 학과명	학위명
공학	토목조경과	공업전문학사
	전기전자계열	공업전문학사
	전자정보계열	공업전문학사
	친환경건축설비과	공업전문학사
	자동차과	공업전문학사
	공병부사관과	공업전문학사
	항공정비과	공업전문학사
	건축과	공업전문학사
인문사회	기계CAD과	공업전문학사
	사회복지경영계열	사회복지전문학사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교육전문학사
자연과학	호텔관광과	호텔관광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계열	호텔외식조리전문학사
예·체능	안경광학과	보건전문학사
	뷰티아트디자인계열	미용예술전문학사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1978년 이전 전문학교로 입학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9학점 이상(개정:2017.08.15.)
2. 2학년 수료 : 77학점 이상(개정:2017.08.15.)
3. 3학년 수료 : 115학점 이상(개정:2017.08.15.)

④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 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① 우리 대학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과 우리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각 대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이수한 학생에게는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2조(유급) ①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 탈락한 자는 재학 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1.)

② 상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수업연한 초과 예상자는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개정: 2015.8.31.)

제8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 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교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도 포함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 출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4조의 2(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처리는 교내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납입금

제45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등록금 중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2018.02.01.)

제46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보훈 대상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제47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8.02.01.)

1. <삭제>(개정:2018.02.01.)

2. <삭제>(개정:2018.02.01.)

3.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8.02.01.)

제12장 교수회

제48조(구성) 우리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장 교무위원회

제50조(교무위원회 운영)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의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구성) 교무위원회는 본부 처/단, 부장 및 총장이 선임하는 교수로 구성한다.

제52조(소집 및 심의)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장 직제

제53조(교직원) 본 대학에는 총장 외에 다음 교직원을 둔다.(개정:2017.08.15.)

1.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조교로 한다.
2. 직원은 일반직으로 분류하고 그 직급은 【별지1】과 같다.

② 전항 제 1호와 관련, 필요에 따라 전임대우교원과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을 교수·지도 및 연구하며, 조교는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관한 업무를 돕는다.

- ④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
- ⑤ 교직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직제)

- ① 우리 대학에는 대학경영지원처, 학사운영처, 산학협력처/단, 입학홍보처, 총무부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개정:2017.08.15.)(개정:2018.02.01.)
- ② 각 처/단에 처/단장, 부에 부장을 보하고 처/단, 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리하고 처/단, 부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각 처, 부의 사무 분장은 따로 정한다.
- ④ LINC사업단은 총장 직속 기구로 편제한다.

제15장 부속기관

제55조(부속기관)

-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을 둔다.(개정:2017.08.15.)(개정:2018.02.01.)
 - 1. 도서관
 - 2. 지식정보원
 - 3. 국제교류원
 - 4. 학생생활상담센터
 - 5. 학산원
 - 6. 교수학습지원센터
 - 7. 글로벌창업교육센터
 - 8. 사회봉사지원센터
 - 9. 산학협력기술연구소
 - 10. 장애학생지원센터
 - 11. 현장실습지원센터
 - 12. 3D프린팅 센터
 - 13. 직업교육과정지원센터
 - 14. 글로벌취업지원센터
 - 15. 신문방송국

제55조의 2(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2015.8.31.)

- 1. 박물관
- 2. 평생교육원
- 3. 한국어교육원
- 4.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5조의 3(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2016.08.29.)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시간
4.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16장 산학협력단

제56조(산학협력단 설립) ① 우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업무를 관장하는 대구공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정관을 가진 법인으로 한다.

제57조(산학협력단 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 또는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8조(산학협력단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진흥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칙 제·개정절차

제5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교무위원회의를 통한 학칙 개정 시 공고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6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우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3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법인이사회의 승인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개정:2018.02.01.)

제18장 자체평가

- 제64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장 등록금심의위원회

- 제65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① 본 대학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을 책정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018.06.29.)
-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2018.06.29.)
- ③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8.06.29.)
- ④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18.06.29.)

제66조(위원의 위촉)

- ① <삭 제> (개정:2018.06.29.)
- ② <삭 제> (개정:2018.06.29.)

제67조(위원장)

- ① <삭 제> (개정:2018.06.29.)
- ② <삭 제> (개정:2018.06.29.)
- ③ <삭 제> (개정:2018.06.29.)

제68조(위원의 임기)

- ① <삭 제> (개정:2018.06.29.)
- ② <삭 제> (개정:2018.06.29.)

제69조(위원회의 기능) <삭 제> (개정:2018.06.29.)

- ① <삭 제> (개정:2018.06.29.)
- ② <삭 제> (개정:2018.06.29.)

제69조의 2(회의 및 의결) <삭 제> (개정:2018.06.29.)

제70조(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삭 제> (개정:2018.06.29.)

제71조(운영규정) <삭 제> (개정:2018.06.29.)

제20장 보칙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학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실업전문학교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구공업전문학교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대구공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조 제3항 및 제 24조 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정원 감축 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업정원	적용학년도	
		부터	까지
요업	240	1986	1987
공업경영	240	1986	1988
	160		1989
건축	280	1986	1988
	240		1989

식 품 공 업	160	1986	1987
가 정	80	1986	1987

제3조(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 정원어세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 16조, 제 1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중에서 1993학년도 제 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수이수단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해당조항 학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휴학 후

복합한 자는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업경영과(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공업경영과(주간)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요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세라믹공업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 45조 3항의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시행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이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구공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도자기공예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도자디자인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전자계산과 및 산업디자인과와 도자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컴퓨터정보과 및 디자인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디자인계열, 세라믹공업과, 식품공업과, 건축설비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산업디자인과, 도자디자인과, 세라믹신소재과, 식음료조리과, 건축환경설비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 및 계열이 변경된 세라믹신소재과, 토목과,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신소재계열, 토목환경과, 컴퓨터정보계열의 학생으로 보며 유아교육과의 수업년간 적용기준은 입학당시의 수업년간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 및 계열이 변경된 신소재계열, 공업경영과, 전기과, 건축환경설비과, 도자디자인과, 식품영양과, 비서행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보석귀금속디자인과, 경영정보과, 컴퓨터응용전기전자과, 건축인테리어계열, 패션약세사리디자인과, 식품영양·조리계열, 비서관광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 명칭이 변경된 보석귀금속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패션악세서리디자인과, 건축과, 토목환경과, 컴퓨터응용전기전자과, 경영정보과, 식음료조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보석귀금속디자인계열, 크로스디자인계열, 건축디자인계열, 공간관리계열, 전기·전자계열, 경영·복지·정보계열, 식음료조리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의 명칭이 변경된 건축디자인계열, 건축인테리어계열, 비서관광계열, 경영복지정보계열, 식음료조리계열, 식품조리영양계열, 크로스디자인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건축생활디자인계열, 관광레저계열, 복지경영계열, 식품조리영양계열, 뷰티아트디자인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단, 건축디자인계열의 건축디자인 전공과 크로스디자인계열의 웹·광고디자인전공은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타학과로 전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 명칭이 변경된 주얼리악세서리계열, 관광레저계열, 식음료조리계열, 호텔영양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액세서리디자인과, 스포츠관광계열, 식품영양조리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 명칭이 변경된 액세서리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액세서리공예디자인과, 귀금속주얼리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명칭이 변경된 식품영양조리계열, 컴퓨터모바일정보계열, 공간관리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제빵조리영양계열, 식음료조리계열, 인터넷디지털정보계열, 토목건설 및 공무원계열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인테리어계열, 귀금속주얼리과, 제빵조리영양계열 소속된 재적생중 2010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액세서리공예디자인과, 식음료조리계열 소속학생으로 보며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폐과로 간주하여 타과로 전과 할 수 있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의 명칭이 변경된 토목건설 및 공무원계열, 인터넷디지털정보계열, 복지경영계열, 식음료조리계열, 스포츠관광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토목조경계열, 디지털전자정보계열, 사회복지경영계열, 호텔외식조리계열, 호텔항공관광과 및 골프요가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설치학과/계열 및 입학 정원, 전과, 재입학, 교육과정, 신입학 특별전형 입학자의 교양 및 교직 학점 인정, 수업 등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의 명칭이 변경된 액세서리공예디자인과, 사회복지경영계열, 골프요가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공예디자인계열, 사회복지계열, 골프지도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에 따른 전과 경과조치) ① 엑세서리공예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소속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폐과 전 소속학과의 취득학점을 전과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칙 개정 전 폐과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① 폐과에 따른 학과의 경과조치로 학과의 모집중단년도부터 5년간 존치년도를 적용하여 모집중단시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칙 개정 전 학과의 휴학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학칙 개정 전 학과의 제적생의 경우 규정학기초과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골프지도과, 안경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골프지도과, 2016년도 말까지 졸업 못하는 안경광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폐과 전 소속학과의 취득학점을 전과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학과명칭이 변경된 토목조경계열, 에너지설비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토목조경과, 친환경건축설비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폐지된 친환경건축설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년 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폐과 전 소속학과의 취득학점을 전과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학과명칭이 변경된 디지털전자정보계열, 자동차계열, 호텔항공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년 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전자정보계열, 자동차과, 호텔관광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23조의3, 제30조, 제55조의3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16조는, 제24조, 제60조는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5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 제10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31조(학위수여 및 수수료)의 1항은 2018년 3월 2일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폐지된 호텔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폐과 전 소속 학과의 취득학점을 전과 학과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학과 명칭이 변경된 전자정보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전자정보통신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53조(교직원),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는 2017년 8월 15일(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교원의 교수시간)은 2018학년도1학기 부터 적용하며, 제24조(교과이수 단위) 2항 3항, 제24조의 6(산업체 현장경력 학점 인정), 제24조의 7(특별학점 인정), 제24조의 8(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의 3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14조(입학전형),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7조(성적), 제29조(성적의 취소), 제31조(졸업 및 수료), 제45조(등록금), 제47조(장학금),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제66조(위원의 위촉),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는 2018년 2월 1일(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교과이수 단위)의 4항, 제29조(성적의 취소)의 2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는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명칭이 변경된 기계CAD과, 뷰티아트디자인계열 헤어디자인전공, 뷰티아트디자인계열 메이크업분장예술전공, 뷰티아트디자인계열 피부&네일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기계과,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분장예술과, 피부&네일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 칙(예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3조의 7(실험실 안전교육 사이버e-러닝 강좌), 제25조(수업), 제25조의 3(원격수업), 제65조(등록금 심의위원회), 제66조(위원의 위촉), 제67조(위원장), 제68조(위원의 임기), 제67조(위원장), 제68조(위원의 임기), 제69조(위원회의 기능), 제69조의 2(회의 및 의결), 제70조(등록금 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제71조(운영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5조의 3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및 계열의 명칭이 변경된 기계CAD과, 뷰티아트디자인계열(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분장예술전공, 피부&네일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기계과, 헤어디자인과, 메이크업분장예술과, 피부&네일과의 학생으로 본다.

【별지1】 직 원 직 급 표

일반직

4급 (참 사)

5급 (부참사)

6급 (주 사)

7급 (부주사)

8급 (서 기)

9급 (부서기)

【별지 제 1호】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구 공 업 대 학 교 총 장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대구공업(발행연도)(일련번호)

【별지 제 2호】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
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구 공 업 대 학 교 총 장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대구공업(발행연도)(일련번호)

【별지 제 3호】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구 공 업 대 학 교 총 장 (인)

【별지 제 5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대 구 공 업 대 학 교 총 장 (인)